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호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6

발의년월일: 2016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최호정, 김광수(도봉), 김영한,

김진철, 김창원, 맹진영, 박기열, 신건택, 유 용, 이윤희, 허기회

의원(11명)

찬 성 자 : 김용석(서초), 남창진, 문형주,

우미경, 이신혜, 이혜경, 최웅식,

한명희 의원(8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운영 방안을 보완하고, '주민자치 주간'을 지 정·운영 하는 등 지방분권 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근거를 정비하여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협의회 위원을 시민,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 자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지방분권 업무 담당 실·본부·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9조).
- 나.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해촉 사유가 발생 한 경우 협의 회 임기 내임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 2).
- 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기념 등을 위해 매년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주민자치 주간으로 지정·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은 시민,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공무원(지방분권 업무 담당 실· 본부·국장), 관계기관 등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4.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5.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주민자치주간 지정·운영 등) ①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는 등 범시민적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 를 주민자치주간으로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기념행사
- 2. 연구발표행사
-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 5. 그 밖에 실질적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범시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시민, 시의회, 학계, <u>시민단체</u> , 관계기관 등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시장이 위촉한다. ③ ~ ⑤ (생략)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시민, 시의회, 학계, <u>시민단체, 관계공무원(지방분권 업무 담당 실·본부·국장)</u> , 관계기관 등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시장이 위촉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제9조의2(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제13조(주민자치주간 지정·운영 등) ①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는 등 범시민적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주민자치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밖에 실질적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범시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